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121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44,355,4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355,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C에게 35,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이자 매월 25일 지급), 대출하는 가계일반자금 대출거래약정((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2. C에게 7,000,000원(최종 49,0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대출이자율 변동금리(MOR+3.4%,이자 매월 12일 지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1998. 11. 6.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20.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C과 피고는 2020. 9. 11.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20. 10. 2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20. 10. 25. 이후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1. 5. 11.을 기준으로 C의 위 대출금은 합계 86,676,330원[제1대출금 35,415,008원 + 제2대출금 51,261,322원]이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부 대출금이 변제되어 2021. 8. 1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합계 44,355,475원[제1대출금 연체이자 3,540,138원(원금 완제) + 제2대출금 40,815,337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3. 4. 26.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인 2020. 10. 20.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1. 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23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으로 추정되는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2021. 8. 11. 기준 피보전채권액인 44,355,4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355,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배우자인 C의 불륜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9. 11.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20. 10. 20.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그 무렵인 2020. 4. 1. 피고에게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5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C은 1998. 11. 6. 혼인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협의이혼신고를 한 2020. 10. 20.까지 22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C은 혼인기간 중인 2008. 3.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8.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이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계약 시인 2020. 4.경에는 130,000,000~142,000,000원, 협의이혼 시인 2020. 10.경에는 150,000,000~155,000,000원 정도였다. 한편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86,676,330원(2021. 5. 11.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4,484,348원, D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21,073,509원(2021. 7. 20. 기준)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협의이혼 당시인 2020. 10.경 원고 및 D조합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피고와의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에 대한 제2대출금은 C이 원고와 별거 후 발생한 채무인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C과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20. 10. 19. E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7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2020. 10. 20.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4,484,348원을 변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을 2020. 10. 20.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7. 15.

어머니로부터 10,000,000원, 2021. 7. 18. 남동생으로부터 10,000,000원, 2021. 7. 19. F에서 30,000,000원을 빌려, C의 A 계좌로 2021. 7. 20. 10,000,500원, 2021. 7. 21.

24,820,500원을 송금하고 2021. 7. 20. C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 합계 42,800,5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도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21. 11. 3. 피고가 C의 대출금 중 9,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1. 25. D조합에 9,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변제내역을 고려하면 피고가 재산분할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와 C이 이혼한 데에는 C의 부정행위, 가출 등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목적 이외에 C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송현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스라브

20층 아파트

1층 946.14㎡

2층 892.14㎡

3층 892.14㎡

4층 892.14㎡

5층 892.14㎡

6층 892.14㎡

7층 892.14㎡

8층 892.14㎡

9층 892.14㎡

10층 892.14㎡

11층 892.14㎡

12층 892.14㎡

13층 892.14㎡

14층 892.14㎡

15층 892.14㎡

16층 892.14㎡

17층 892.14㎡

18층 892.14㎡

19층 892.14㎡

20층 892.14㎡

지1층 878.22㎡ 대피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대 2924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9243분의 29.782

